## 경기도 공고 제2025-67호

## 2025년 어업활동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

사고,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해 추진하는 「2025년도 어업활동 지원사업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25. 1. 10. 경 기 도 지 사

## 1. 사업개요

가. 사업기간 : 2025. 1. 10. ~ 12. 31. (예산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)

나. 사 업 비 : 12백만원 (국비 50%, 도비 30%, 자부담 20%)

- 다. 지원내용 : 사고 · 질병 ·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의 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
- \* 가사일이나 어업외 활동 및 어장청소·어구 정리 등 단순한 일 처리를 위한 대체인력은 지원할 수 없음
- \*\* 단, 「수산업법」제65조(어구·시설물의 철거)에 따라 어장시설물 철거 기간 내 철거작업, 청소· 어구 정리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가능
- 라. 지원한도 : 1일 120,000원 이내
- 1) 지원금 80%, 자부담 20%이며 1일 120,000원 초과시 초과금액은 자부담
- 2) 가구당 연간 30일 지원
- \* 단,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,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

# 2. 지원대상

- 가.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(통원치료 등)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·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
- 나. 3일 이상 입원한 경우
- 다.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- 라.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(암, 심장질환(고혈압 제외), 뇌혈관질환, 희귀난치성질환)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
- 마. '어업인 교육과정'에 참여한 여성어업인
  - \* 어업인 교육과정 : 해양수산부(소속기관 및 해수부 인가 어업인교육)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일(4시간) 이상 교육
- 바. 제1~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
- \* 신청자격 :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

#### <어업활동지원 신청 제외 대상>

- ㅇ 어업경영체 등록시 가족종사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
- ㅇ 수산업법 제48조(신고어업)제1항에 의한 나잠어업 및 맨손어업 신고자
- ㅇ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1주일 이상 진단·입원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o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중 직접적인 어업활동을 하는 자외 출하·유통·가공·판매· 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
- o 동일인이 3년 연속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신청자의 지원요건을 엄격히 검토하여야 하며, 경합이 있을 시 신청 횟 수가 적은 신청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## 3. 신청 및 대체인력자 지원일수

구분	신청기간*	지원일수
1주일 이상 요양진단	진단일 이후 진단기간 내	최대 30일 이내
3일 이상 입원한 경우	입원 중 또는 퇴원 후 익일 30일 이내	최대 30일 이내
통원치료 시	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 치료 후 15일 이내	최대 30일 이내
임신 및 출산	임신 및 출산 후 90일 이내	최대 60일 이내
교육참여시	교육시작전 10일부터 교육 후 7일 이내	최대 30일 이내
4대 중증 질환	수술(입원) 및 퇴원(통원치료) 후 6개월 이내	최대 60일 이내
격리 시	자가격리 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30일 이내	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 이내

- \* 가료기간 및 진단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청시점 의사소견서로 어업활동 가능여부 판단
- ※ 어업활동 대체인력 이용을 위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, 도의 승인 없이 임의사용 후 사후 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

## 4. 구비서류

- 가. 어업활동지원 이용 신청서 (붙임 1 서식)
- 나. 개인정보 수집이용·제공 동의서 (붙임 2 서식)
- 다. 진단서, 입원 확인서, 의사 소견서, 진료기록 중 택 1
- 라.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
- 마. 가족관계증명서

## 5. 신청기간 및 접수처

- 가. 신청기간: 2025. 1. 10.(금) ~ 예산 소진시까지
- 나. 접 수 처: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
-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(☎ 031-8008-836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